□ 내부제보

미래에셋증권 임직원의 위법부당행위를 신고, 제보하는 제도로 신고접수 및 결과확인 등 신고관련 전과정은 신고자의 신분보장을 위하여 익명으로 이루어집니다.

'내부제보'란?

미래에셋증권(이하 "회사"라 합니다.) 임직원이 회사나 또는 다른 임직원의 위법 부당한 행위 등을 회사에 신고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.

신고대상 행위

- 횡령, 배임, 절도, 금품수수 등 범죄협혐의 행위 발생사실 또는 그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
- 회계정보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회계정보 1 위조, 변조, 훼손 또는 파기하는 행위 및 이를 지시하는 행위
- 법 등 관계법규 또는 내부통제제도 위반사항
- 고객과 분쟁이 발생한 사실 또는 분쟁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
- 변칙적 자금 유치 및 고객과의 사적 거래 등으로 인해 회사에 대하여 법적, 경제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사항
- 상사의 부당한 업무지시
- 청탁금지법에서 정한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등 위반사항
- 윤리강령 미준수 사실
- 기타 회사의 이미지를 실추시길 수 있는 행위 등

신고방법

- 익명신고 : 홈페이지 상단 "위법부당행위 신고하기" 클릭 (실명신고도 가능)
- 내부제보의 경우 준법감시인을 수신자로 하여 면답 (전자)우표 전화 및 전신, 모사전송, 컴퓨터, 기타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 등의 방법(실명 신고 가능)

신고자 신분보호

- 내부제보는 익명신고 및 실명신고가 가능합니다.
- 신고자의 신분을 누설하거나 신고자의 신분을 추적하는 행위는 '내부통제기준' 및 '내부통제기준 시행세칙'에 따라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습니다.

• 근무조건상 차별 등 일체의 불이익을 신고자에게 줄 수 없으며 해당 행위는 '내부통제기준' 및 '내부통제기준 시행세칙'에 따라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습니다.

신고자 조치감면

임직원이 본인의 내부비리행위 등에 대하여 사실이 인지되기 전에 회사에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는 징계를 감면할 수 있습니다.

포상금 지급

신고내용이 회사의 재산보호에 기여한 바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회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제보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.

[포상금 지급 제외]

- 제보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거나 증거부족으로 인하여 사실여부 확인이 곤란한 경우
- 이미 제보된 사항이거나, 감사부서 및 기타 관련부서 또는 외부기관에서 이미 인지하여 조사가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사항
- 연론보도 등에 의해 공개된 사항
- 단순 업무개선과 관련된 사항
- 신고자가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
- 기타 포상심의 결과 포상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
신고 시 유의사항

- 신고내용을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주십시오.
- 개인의 Privacy 와 관련한 사항은 신고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- 신고내용이 명백히 허위이거나 신고내용의 진위 파악이 곤란한 경우 등의 경우 신고관련 조사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.

처리 과정

• 신고 처리자는 제보내용의 진위여부 및 사실 확인을 신속하게 진행하고, 필요 시 임직원 또는 관련부서의 지원을 요청하거나 감사담당부서, 준법감시부서에 특별감사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.

- 해당부서, 감사담당부서 또는 준법감시 부서는 특별감사결과 및 조치사항을 신고 처리자에게 통보합니다.
- 신고 처리자는 신고내용의 처리결과를 제보자에게 통보할 수 있습니다.